[ ] 기간제/단시간/파견 차별
[ ] 일학습병행 차별
[ ] 고용상 성차별
[ ]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 · 불리한 처우 등

시정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(생년월일: , 성별:)		
	주 소	(☎:)		
	직위 및 담당업무		근무기간	
	차별적 처우 발생일			
	고용형태	[ ] 기간제근로자 [ ] 단시간근로자 [ ] 파견근로자 [ ] 무기계약직근로자		
피신청인 (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)	사업장명		대 표 자	
	소 재 지	(☎:)		
	사업종류		근로자수	
피신청인 (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)	사업장명		대 표 자	
	소 재 지	(☎:)		
	사업종류		근로자수	
신청취지				
신청이유	차별적 처우 내 용			
	잠 정 적 비교대상자	* 기간제 · 단시간 · 파견 · 일학습병행 차별시정의 경우 필수기재 * 고용상 성차별시정은 임금상 성차별 · 간접차별의 경우 등 필요 시 기재		

위 근로자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,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

구비서류	차별적 처우를 입증하는 자료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처 리 절 차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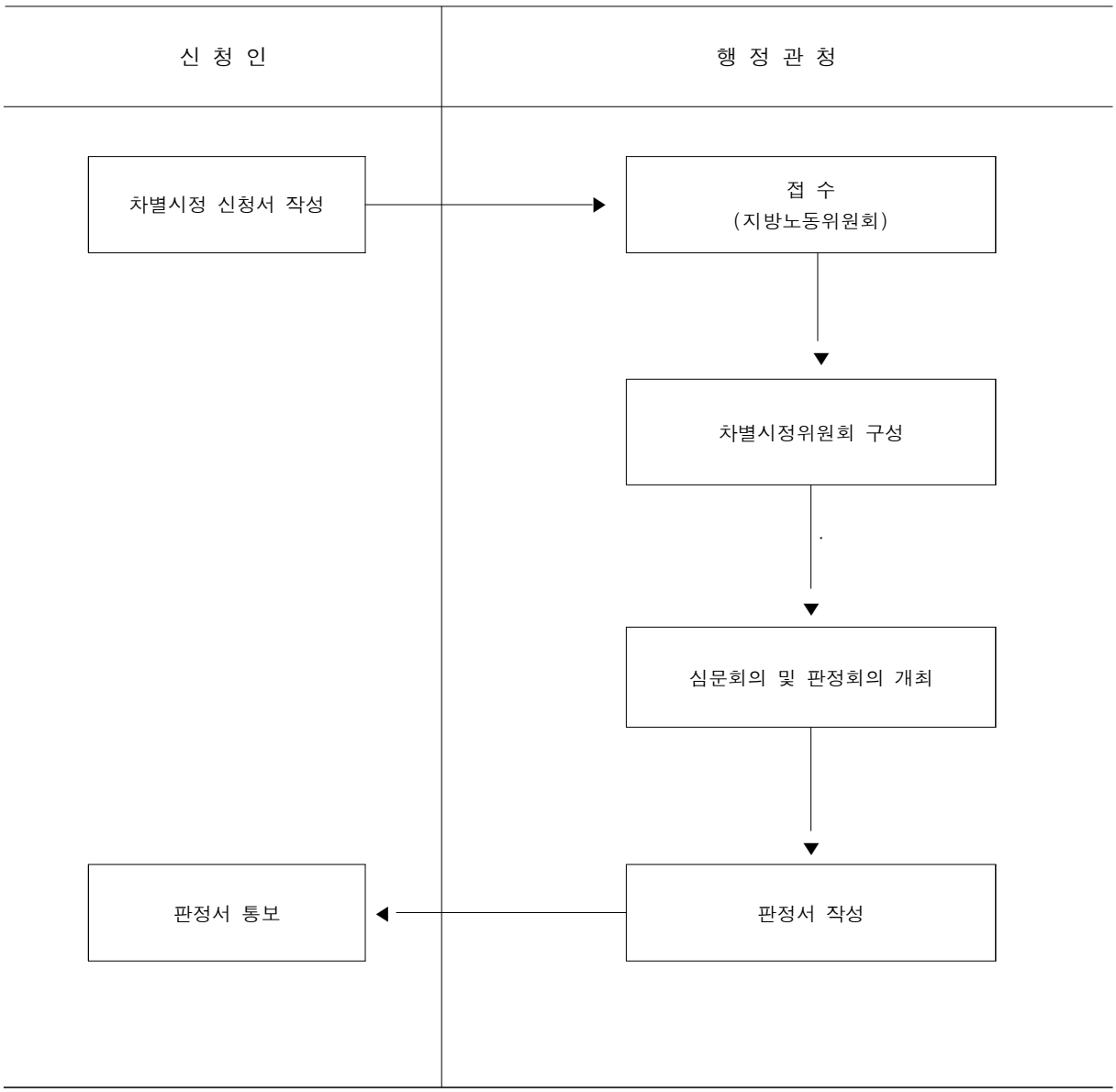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